

특허기술 사업화 최근 동향 - 지식재산(IP) 금융

Recent Trends in Commercialization of Patent 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IP) Finance

주한중·민봉기 | 한국발명진흥회

HanJung Ju · BongKee Min |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서문

특허권만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2013년 초 특허청과 한국산업은행이 협력하여 IP담보대출이라는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금융위원장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담보로 창업·혁신기업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조금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존의 담보 위주의 여신이나 보증의 금융행위는 '투자·인수합병(M&A)·지식재산금융' 등으로 새롭게 확대·변형돼 창조금융을 만들어갈 수 있다¹⁾라고 밝힌 이래로, 여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창조금융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금융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재산금융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조달에 있어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제도라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지식재산금융의 의미와 도입배경,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IP금융 상품 등을 살펴보고, 정부의 IP금융 정책과, 기업이 IP금융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지식재산 금융의 의미와 유형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

1) 임세원, "[서경 금융전략포럼]아이디어 보고 대출·투자하는 시대...M&A·지식재산금융 등 활성화 해야, 신재윤의 창조금융론", 서울경제, 2013.04.25



Fig. 1. Struc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Financing

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의미²⁾한다.

지식재산금융이란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식에 대한 재산권, 즉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여 이를 매개로 한 금융을 말한다(Fig. 1).

지식재산금융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 요소는 지식재산권과 금융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IP에 대한 평가이다. 간단하게는 IP가 좋은지 여부만을 평가할 수도 있고, IP의 금융자산으로 가치 금액을 산정하는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도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IP금융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IP 평가라는 과정이 포함되게 된다.

IP금융은 크게 IP기반 기술금융, IP자산 금융, IP비즈니스 금융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³⁾(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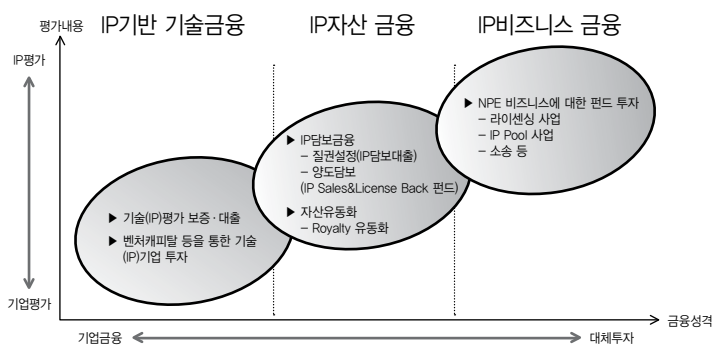


Fig. 2. Categories of IP Finance

2) 지식재산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 법률 제10629호, 2011.07.20

3) 조경철, IP금융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금융연수원 세미나, 2013.07.09

IP기반 기술금융은 기술과 IP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 및 IP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 보증·대출을 하거나, 우수한 기술 및 IP를 가진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평가는 엄격한 가치평가를 의미하지는 않고,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더불어 지식재산의 우수성에 대한 판단 또는 등급·점수 형태의 평가가 적용될 수 있다.

IP자산 금융은 IP를 실제 금융 자산 또는 담보로 인정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IP에 대한 엄격한 가치평가가 수반되게 된다. IP의 자산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을 담보금액 또는 매각금액으로 인정하여 금융을 연계하는 것이다.

IP비즈니스 금융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라고 보는 것 보다 IP 자체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이라고 볼 수 있다. IP 자체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IP를 매입하고 소송이나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IP비즈니스를 위해 금융기관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재산금융의 도입배경

세계는 산업기반 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이미 전환되어 왔고, 기술, 브랜드 등의 무형자산의 가치가 기업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S&P 500 기업의 기업가치 중 무형자산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17%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80%에 달하고 있다 (Fig. 3). 혁신적인 기업의 대명사인 미국 애플사의 경우 기업가치 중 무형자산 가치의 비중이 90%에 달한다⁴⁾고도 한다.

IP는 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상실한 미국은 금융과 IP를 무기로 하여 여전히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IP가 차지하는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최근의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보듯이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경쟁기업과의 특허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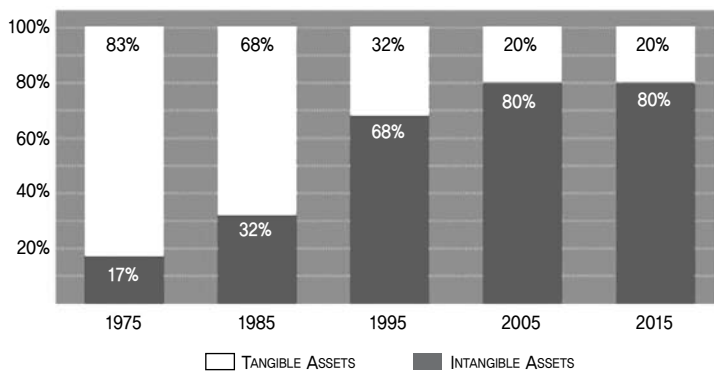


Fig. 3. Components of S&P 500 Market Value⁵⁾

4) 권희순, "특허 괴물 잡는 IP펀드 상반기 나온다", 머니투데이, 2012.04.19

5) Ocean Tomo, LLC, Intellectual Capital Equity, <http://www.oceantomo.com/about/intellectualcapitalequity>, 2013.12.13

이와 같이 기업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 등의 유형 자산보다 특허 등 지식재산이 가지는 가치가 더 큰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재산 금융의 도입은 너무나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은행들에 있어서 IP금융의 도입은 지식기반 시대의 도래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개선되어야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다.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금융 추진 현황

한국산업은행은 2013년 3월 특허청과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P담보 대출을 시행함을 밝혔고, 9월 말 기준으로 5개 기업에 대해 총 67억원의 IP담보대출을 시행⁶⁾하였다.

IP담보대출은 기술평가기관에서 IP의 담보 가치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그 가치평가 결

과 금액을 그대로 담보로 인정해주어 은행이 대출을 하는 상품이다. 산업은행의 IP담보대출은, 특허청이 IP가치평가 수수료를 전액 지원해주고 부실시 회수를 담당하는 회수지원펀드에 함께 출자함에 따라 구조가 완성되었다. 한 개 기업당 최대 20억원 규모로, 2013년 20건 내외의 담보대출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Fig. 4).

아이디어브리τζ자산운용(IB)은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하는 특별자산 전문 자산운용사로서 2012년 3월 출범하였다. IB는 2013년 초 산업은행으로부터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받아 지식재산권 전문 펀드를 설립하였고, 이 펀드는 IP Sale & License Back(SLB) 구조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SLB 펀드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약정 기간 후에 환매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입함으로써, 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펀드는 기업으로부터 실시료를 받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SLB 펀드는 매입한 특허권으로 다시 라이선스 등을 통한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를 가진다.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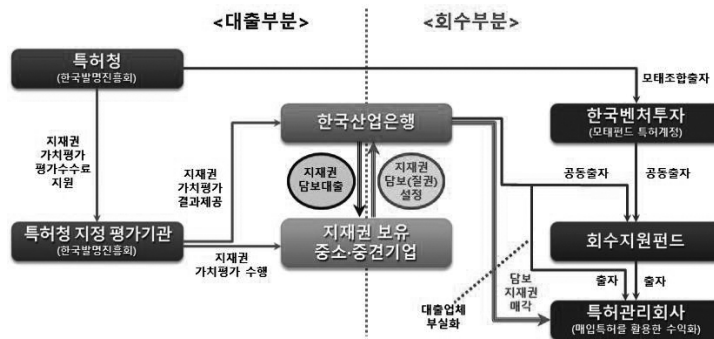


Fig. 4. Structure of KDB IP Secured Loan

6) 박용범, "지재권만으로 은행 대출... '창조금융' 첫발", 매일경제, 2013.1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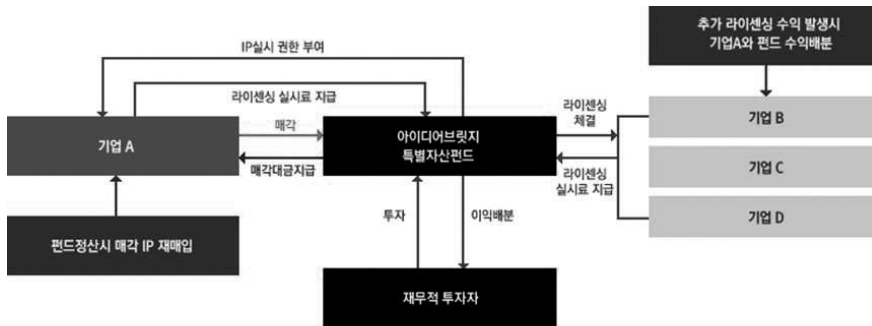


Fig. 5. Structure of IP Sale & Licence Back Fund

년 3월 2개 기업이 약 70억원 규모로 IB사의 SLB 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있으며, IB사는 2013년 말까지 SLB 펀드를 통해 약 20여건의 투자를 시행할 계획에 있다(Fig. 5).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도, 지식재산금융을 매우 활발히 시행 중이다. 기술평가기관의 IP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특허권을 보증기관이 담보로 설정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이다.

기술보증기금은 2005년 특허청과 협약을 맺고

2006년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이라는 보증상품을 처음으로 출시하고, 매년 약 200개 기업에 대해 특허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2013년 3월까지 누적 7,866억원의 보증을 공급⁷⁾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13년 특허청과 협약을 맺고 기술보증기금과 유사한 구조의 지식재산보증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하였다(Fig. 6).

기업은행은 2012년부터 문화콘텐츠 분야 관련 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시행해왔고, 2013년 5월부터 지식재산금융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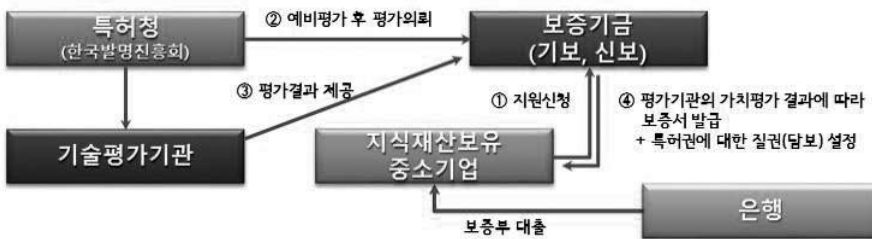


Fig. 6. Structure of IP Guaranteed Loan

7) 강진규, "기술보증기금, 특허기술가치연계보증 7866억 공급", 디지털타임즈, 2013.04.22

고 있는 상황이다. 우수 IP기업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기술평가비용과 보증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산업은행의 IP담보대출을 보다 개선한 형태로 새로운 IP담보 상품의 시행도 특허청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등 후발주자인 만큼 가장 적극적인 IP금융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의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IP금융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상품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재산금융 관련 정부 정책

한편,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지식재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4월 한국은행은 특허권 등을 보유한 창조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총액한도대출에 기술형창업지원한도 3조원을 신설하여, 은행권의 IP금융 추진을 위한 자금 공급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3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성장사다리 펀드 내에 지식재산권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6월 특허청이 발표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에서는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IP담보대출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IP 사업화 기업에 대하여 모

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을 밝힌바 있고, 7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식재산금융 접근성 제고, 금융접근 수단의 다양화, 지식금융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지식재산 우대보증과 가치평가 보증을 도입 및 확대하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IP 평가·거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0월에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식재산·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지식재산·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6대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으로 수요자 맞춤형 평가체계 수립, 평가 준거정보 통합 DB 구축, 평가 품질관리 제도 도입, 리스크 완화 기제 마련, 평가대상 제도화 및 비용지원 확대, IP·기술 거래 활성화 대책 연계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11월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기술평가·기술금융 활성화 공개세미나”에 참석하여 금융회사에 맞춤형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기술평가기관 설립과 금융회사 여신·투자 모형에 평가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더욱 고민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개인 및 기업의 기술정보를 관리하는 테크뷰로(TB·Tech Bureau)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⁸⁾(Table 1).

이상과 같이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특허권 등 우

8) 박신영, “신제윤, 기술평가기관 설립하겠다”, 한국경제, 2013.11.13

수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재산 금융을 위한 기업의 전략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기관들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어놓고 있고, 여러 정부부처들은 IP금융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IP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IP금융의 기초 자산은 IP이므로, 기업은 좋은 IP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IP금융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요건이 된다. 그렇다면, 금융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좋은 IP란 어떤 IP인가?

지식재산권 중 가장 대표적인 권리인 특허권의 경우, 기술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한 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IP가 좋다고 하기 위해서는, IP가 보호하고 있는 기술이 좋아야 함은 당연한 말이지만,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술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자체의 품질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특허 무효심판의 무효율은 50% 전후이고,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30%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수치는 중소기업이 특허권자인 경우 더욱 낮아진다. 국내에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지만, 이들의 연구개발 결과물은 좋은 품질의 특허권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특허권은 그저 R&D의 실적 보고용으로 확보하고 있고, IP의 품질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특허권의 창출에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특허 확보에 들어가는 돈은 기업의 비용 낭비일 뿐일 수 있다. 기업은 R&D가 IP 창출과 일체화 되는 것이고, 연구개발은 IP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IP 창출 시에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 로드맵과 IP가 완벽하게 연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IP 창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IP는 포기하고 사업화 활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IP 확보를 통해 IP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되고 관리된 IP가 비로소 금융자산으로서 가치 있는 IP가 될 수 있다.

이제 IP가 금융을 일으키는 수단이 되는 시대가 왔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IP금융을 적극적으로 추

Table 1. IP Finance-related Policy Announcements of Government Agencies

부처	관련 정책	발표일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기술형창업지원한도 3조원 신설	2013년 4월
관계부처 합동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2013년 5월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 전략	2013년 6월
관계부처 합동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2013년 7월
관계부처 합동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	2013년 10월
금융위원회	테크뷰로(TB·Tech Bureau) 설립 추진	2013년 11월

진하려고 하더라도, 기업이 금융자산이 될 수 있는 좋은 IP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IP금융은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 기업은 좋은 IP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좋은 IP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와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2013년은 우리나라에 IP금융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IP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대를 통해,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IP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 IP 창출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IP가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선순환의 체계가 바로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 참고문헌 ●

1. 강진규, “기술보증기금, 특허기술가치연계보증 7866억 공급”, 디지털타임즈, 2013.04.22
2. 관계부처 합동,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2013.05.15
3. 관계부처 합동, 지식재산·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 2013.10.16
4. 관계부처 합동,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2013.07.30

5. 권희순, “특허 괴물 잡는 IP펀드 상반기 나온다”, 머니투데이, 2012.04.19
6. 박신영, “신제윤, 기술평가기관 선립하겠다”, 한국경제, 2013.11.13
7. 박용범, “지재권만으로 은행 대출... ‘창조금융’ 첫발”, 매일경제, 2013.10.07
8. 임세원, “[서경 금융전략포럼]아이디어 보고 대출·투자하는 시대...M&A·지식재산금융 등 활성화 해야, 신제윤의 창조금융론”, 서울경제, 2013.04.25
9. 조경칠, IP금융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금융연수원 2013년 제2차 세미나, 서울, 2013.07.09
10.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 전략, 2013.06.25
11. Ocean Tomo, LLC, Intellectual Capital Equity, <http://www.oceantomo.com/about/intellectualcapitalequity>, 2013.12.13

주 한 중 경영학 석사

소 속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변리사
 전문분야 : 지식재산금융, 지식재산평가, 특허기술사업화 등

E-mail : hju@lawhas.com

T E L : 070-4820-5526